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453
-----------	------

2018년 4월 10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21일, 김경자(양천) 의원 외 15명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27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자(양천) 의원)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환과 양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교육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는 교환 및 양여만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1일 김경자(양천)의원 등 16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53호로 발의되어 2018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제26호가목에 따르면 해당 교육장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만 해당)의 경우 교육장이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의 경우 교환과 양여로 처분의 범위를 한정된 것입니다.

○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1)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처분²⁾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처분 중 양여와 교환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 일괄하여 취득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처분의 경우 상위법률의 규정을 넘어서 모든 처분의 경우에도 권한의 위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위임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반면 종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³⁾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1)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행정관리담당관 -2835)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6호 “가” 목 중 “일반재산” 을 삭제하고, 단서를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 로 한다.

제5조제26호의 “나” 목의 내용 중 “가목에도” 를 “가목과 나목에도” 로 하고, “나” 목을 “다” 목으로 변경한다.

제5조제26호의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25. (생략)</p> <p>26.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소관 행정재산, <u>일반재산</u>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u>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u></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u></p> <p>27. ~ 36.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25. (현행과 같음)</p> <p>26.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소관 행정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u>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가목과 나목에도 -----</u> ----- ----- ----- -----</p> <p>27. ~ 36. (현행과 같음)</p>